

# 그린 라운드(Green Round)란 무엇인가

## 1. 서론

1972년 스톡홀름서 세계 최초로 국제적 차원의 UN 환경선언이 채택된 이래,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지구환경파괴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파급 효과가 어느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범 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환경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냉전종식에 따른 동서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환경문제가 주요한 협력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환경협약들은 각국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가입국이나 불준수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무역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우기 지난 해 12월 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산업확보를 위한 기존의 무역규제수단들이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주의제로 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2.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

### 1) 정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들이 국제환경협약, 지역환경협정, 쌍무간 또는 개별국의 일방적인 규제조치 등을 통하여 무원칙적으로 발동됨에 따라 규제내용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이 GATT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GATT 회원국간에 통용되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한 다자간무역협상을 환경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Green Round'의 개념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이행을 담당하는 지속개발위원회(CSD)의 활동,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이행 등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과 개발, 그리고 무역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배경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다자간환경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산성비 주변해역 및 국제하천

주)

본고는 지난 1월 환경운동 연합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제질서:그린라운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의 오염 등을 둘러 싸고 인접국가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들에 의해서도 자국이 설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일방적인 환경규제조치도 빈번하게 발동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그 형태가 지역협정이든 개별국에 의한 일방적인 규제조치이든 대부분 무역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GATT의 이념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환경관련 무역규범을 GATT 체제내에 흡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3) 추진동향

GATT는 환경규제조치가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GATT의 이념과 상충됨에 따라 환경과 무역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0여 년 전 설치된 무역환경작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OECD는 무역 환경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중에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제조업종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등 서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여 경영단위별로 종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환경경영 국제규격의 채택을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Max Baucus 미 상원의원은 1991년 10월 환경기준의 차이가 경쟁적 격차의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계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무역협상인 Green Round의 출범을 제의하였다.

미국은 1993년 7월 UR 체결 이후 공정경쟁, 기술, 투자, 노동분야와 함께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클린턴라운드의 출범을 제의한 바 있다.

### 4) 향후 추진전망과 주요내용

추후 환경라운드의 추진일정과 내용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출범 시점은 대체로 UR의 발효가 예상되는 1995년 중반경으로 예상된다.

이는 GATT의 대체기구로 설립하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년 초반경에 구체화되고 국제환경협약 중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게 될 기후변화협약이 금년 3월 중에 발효되어 협약의 개정이나 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규제 내용이 구체화될 시점이 내년 중반경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OCED 등에서 통용되고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 생산자 책임원칙 등을 토대로 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관계정립에 모아질 것이며, 환경과 무역의 관계는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환경규제가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린라운드에서는 선진국들의 생산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란 차원에서 공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마다 상이한 환경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도 대두될 것이나 이미 경제 통합을 이룩한 EC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채택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 5) 특징

그린라운드는 무역자유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던 종전의 다자간무역협상과는 달리 무역을 규제하는 형태로 협상방향이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라운드(1964~67년)에서는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고, 이어서 동경라운드(1973~79)를 통해 수량규제 등 많은 비관세장벽의 발동이 제한되었으며 이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자유화 대상범위를 제조제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산물 등으로 확대시켰다.

물론 차기라운드에서도 UR에서 미타결된 일부 서비스 부문의 개방화가 추진되는 동시에 자유화 범위를 상품 및 서비스에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역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킬 수도 있으나 환경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와 반대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규제조치는 지구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단일지 모르나 그 근거에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사용해 오던 기존의 수단들을 UR의 타결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의 대체수단으로서 환경요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다.

협상은 이번 UR 협상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추진될 것인바, WTO에는 GATT에서와는 달리 강제집행권을 부여하고 의결방식도 중전의 만장일치에서 다수결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그린라운드의 협상기간이 UR에 비해 크게 단축되고 미국에 비해 환경규제요구가 강한 EC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라운드도 종래의 다자간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나 선진국 간에는 협상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협상에서는 미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환경라운드에서는 유엔 환경개발회의 등 국제환경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C와 일본이 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 3.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 1) 국제환경규제의 영향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국내 환경질의 개선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도 증대되

고 있어 환경질의 개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 및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볼 때 국제환경규제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체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산업 및 업종별로는 영향이 크게 상이할 것인바 국제분업구조의 형태 및 기술수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산업이나 업종도 있을 것이다.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은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환경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이 전혀 불가능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반면 여타국들의 수출여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가 완화될 수도 있어 오히려 환경규제를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 2)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 (1) 환경외교의 강화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이나 GATT내 환경과 무역에 관한 협의 등의 협상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2)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대국민홍보 강화

국가경제운용을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ESSD)의 개념

을 바탕으로 재정립하고 국가경제지표도 생산 측면만 반영된 국민총생산(GNP)에서 환경오염 등을 차감한 녹색 GNP(Green GNP)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사전 준비능력의 확립이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환경라운드 논의동향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3)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

무역제재 등 국제환경협약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결된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이를 위한 국내법령제정, 제도정비, 관련업계의 대응능력제고 등 내적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석유화학 등 노동, 자원 및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중심에서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기술 지적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기술개발과 공해방지시설업 등 관련산업이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환경규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의 개발과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기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요가 창출된다는 환경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외 환경시장규모는 급증할 것이므로 국내 시장의 확보는 물론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도 환경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 (6) 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의 수립 추진

국내산업의 잠재력과 국제환경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내환경기준을 재검토한 후 환경목표를 장·단기로 구분하고 설정하여 이의 달

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 공해방지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경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현행의 직접규제방식 및 배출부과금제도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배출규제와 공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기업의 대응방안

#### (1)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의 수립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은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기업은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즉,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기업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녹색생산(Green Production), 녹색마케팅(Green Marketing), 녹색이미지(Green Image) 등 녹색전략(Green Strategy)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2) 환경관련조직의 강화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조직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국제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협상개최지는 물론 OELD, EC, GATT, ISO 등 국제기구가 소재한 지역의 지사에 환경전담요원을 파견해 둘 필요가 있다.

#### (3) 생산공정의 혁신

단기적으로는 오염방지시설의 증·개설을 통해 최종처리(end-of-pipe)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오염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 개선, 청정기술의 개발 등을 오염발생의 예방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